

「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□ 의안번호 제2650호

「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'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, 주민세 재산분이 통폐합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체납처분 유예 요건인 성실납부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시세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
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□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1. 9. 8.

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 병 한